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۴,
	_	

선	기관(부서)의 장
람	

http://www.daedeok.go.kr 제2023-58호 2023. 10. 6.(금)

차 례

조 례(16)

공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85호)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86호)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687호) · · 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88호) 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689호)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조례 제1690호)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91호) 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조례 제1692호)2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조례 제1693호) 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94호) 3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95호) 3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96호) 42
• 대전광역시대덕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97호) 4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98호) 4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99호) 5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00호)54
공 고(1)

발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1059호) 5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 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8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덕구의회 소속"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을 "이란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6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검진비를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사업의 내용을 정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회 소속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 하여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제1호에 단서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8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를"「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덕구 본청, 사업소, 복합문화센터, 동, 의회사무과"를 "대덕구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하여 자신"을 "사용하여 자신"으로 한다.

제6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검진 비를 지워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사업의 내용을 정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조직체계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변경함(제2조제1호)
- 나.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제1호에 단서 신설).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8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재 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여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이 가능하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대덕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다.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활동 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을 위하여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덕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을 위한 기관 및 시설을 규정함(제3조).
- 다.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제4조).
- 라. 방연마스크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마.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8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11호·제12호·제13호"를 "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7호·제8호·제1호·제12호·제13호·제13호·제1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제6조의4제2호).
- 나.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제2조 및 제6조의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8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 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 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

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 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생리용품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함(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라.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9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 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 4.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 2.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4.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 5.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 ·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제3조).
- 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라.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9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금의 재원"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재원"으로, "구의"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로 한

다.

제3조 중 "이 회계"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중"을 "「지방회계법」 중"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 및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1조).
- 나. 인용 조문 정비 및 약칭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9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저지르는 성적 괴롭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 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 4.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사업 모니터링
-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 작·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영상물 삭제 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제작・편집・ 합성・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7조)
- 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력체 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9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 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지역 중 지역의 역사성, 문화적 상징성, 및 경관상의 우수성 등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 간의 조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헌도, 주민의 호응도 및 문화적 파급효과 등

- 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주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
- 1. 가로등. 벤치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
- 2. 주변 건물의 색상
- 3. 간판 등의 광고물
-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 제4조(문화예술 행사)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안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전시와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문화의 거리 지정
- 2.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대덕구 관내 지역 중 역사·문화적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역사와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여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 나. 문화예술 행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 다. 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9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시행규칙 제16조의6"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2항 관련)

수거방법	대	상	용량	금	액	비고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수거 용 기	단독,연립 등		3ℓ	180	원	
			5ℓ	300	원	
	소형음식점 등	10ℓ	600	원	배출량에 따라 용기 선택 가능	
		20ℓ	1,20	0원		
	공동	주택	120ℓ	7,20	0원	

- (주)무게단위(kg)로 계량하여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리터당 부피 환산계수 0.75kg(1ℓ = 0.75kg)을 적용한다.
-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별표 1의 수수료 적용에서 제외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색 상	종 류	규 격	비고
	흰 색	3ℓ		
폐기물	노랑색	5ℓ		
	주황색	10ℓ	가로120mm×세로30mm	
	청 색	20ℓ		
	빨강색	120 <i>l</i>		

(주)단,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인쇄문안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ℓ)	붙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ℓ)		
바코드 이 부분이 훼손되면	이	수거되지 않습니다. 바코드		
스티커는 손잡이에 감아서 부착합니다.	는	스티커는 손잡이에 감아서 부착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연락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3.4)	곳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판매단위	<i>향</i> 용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OH	3ℓ	171	9	180
음식물류	OH	5ℓ	285	15	300
폐기물	OH	10ℓ	570	30	600
전용수거 용 기	OH	20ℓ	1,140	60	1,200
	ОН	120 <i>l</i>	6,840	360	7,2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배출용량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사원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정비함(별표 1).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 정비함(별표 2).
- 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 판매가격 정비함(별표 3).
- 라. 상위법에 불부합한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제14조 및 제2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 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9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재활용품"이란"을 ""재활용가능자원"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 중 "재활용품"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만" 표기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면서, 일부 용어의 미비한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만"표시 삭제함(제2조, 제5조). 나.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제2조, 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9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중 장기"를 "중장기"로, "적립금을"을 "적립금으로"로 한다. 제10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제1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대덕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97호

대전광역시대덕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대덕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대덕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세출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 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조).
- 나. 근거법령과 중복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간결하게 정비함(제2조 및 제3조).
- 다. 띄어쓰기 및 약칭 사용 규정에 맞게 정비함(제명 및 제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9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중 "지하수관리 특별 회계"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로 한다.

제17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된 지 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부합 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하수 측정시설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함(제3조제1호 및 제2호).
- 나.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구성을 상위법에 맞게 의무규정에서 임 의규정으로 변경함(제4조제1항).
- 다. 띄어쓰기 및 약칭 사용 규정에 맞게 정비함(제9조).
- 라.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부합한 인용 조문을 수정함(제15조).
- 마.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제1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 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9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2항 "을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상향 부과기준은 1년 이내에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최초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의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부과금액(단위: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 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50	100	2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 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지역보건법」개정(2023. 3. 28.)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 및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추가 및 정비함(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0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65세"를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口 개정이유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대상 기준을 명확히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함(제6조제2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공고기간: 2023. 10. 6. ~ 2023. 10. 20.(15일간)
-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우쭈쭈꾸미 (박0서) / 대덕구 중리남로7번길 1, 1층(중리동)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우쭈쭈꾸미(사업자등록 폐업일 2016. 12. 14.)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6902. 끝.